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6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추가 등(신영대의원안)	2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4. 10. 28.
-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 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추가 등(신영대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대중교통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도서 등	-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tr><td colspan="2"><신 설></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 공제 한도: (단위: 만원)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2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신 설>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및 공제한도 확대 등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tr><td>-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td><td>3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 공제 한도 (단위: 만원)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400</td><td>30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400</td><td>3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400	3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신 설>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3년 대비 '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400	3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69)

□ 개정안은 ①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공제율 30%)을 추가하고, ②기본공제 한도 및 추가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③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특수학교, 종교시설, 자연휴양림 등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을 지칭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놀이시설은 82,520개³⁾이고, 아파트 단지, 학교, 자연휴양림 등에 위치한 야외 놀이터부터 식당 또는 사옥 내 실내 놀이터, 대형 쇼핑몰 내 키즈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장소 현황]

설치장소	놀이시설 수	설치장소	놀이시설 수
주택단지	44,311	자연휴양림	133
도시공원	12,014	육아종합지원센터	108
어린이집	7,504	학원	107
유치원	7,400	박물관	90
학교	6,851	대규모점포	82
놀이제공영업소	1,607	하천	79

3) 관리대상 시설 수는 총 83,041개소임

설치장소	놀이시설 수	설치장소	놀이시설 수
식품접객업소	1,305	목욕장업소	71
아동복지시설	395	공공도서관	51
종교시설	358	의료기관	33
주상복합	310	도로휴게시설	33
야영장	167	유아교육진흥원	32
합계		83,041	

자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개정안은 ①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등 영유아용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놀이 및 교육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이하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을 추가하고,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②전체 공제항목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에서 300만원(충급여액 7천만원 초과) 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충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 역시 현행 대비 100만원 상향조정하며,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말까지에서 2026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먼저 ①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유자녀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평균소득을 받는 독신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 세부담 수준)는 24.6%이고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구는 19.1%의 조세격차에 직면해 가구형태에 따른 조세격차 차이가 5.5%p로, OECD 평균인 9.1%p의 60%에 불과함⁴⁾.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⁵⁾.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⁶⁾이 세계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유자녀가구와 독신가구의 세부담 차이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OECD, “Taxing Wages 2024”, 2024

5) 한국경제연구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검토”, 2022

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¹⁾]

(단위: %, %p)

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조세격차 ²⁾	독신가구 조세격차 ³⁾	차이
독일	33.1	47.9	14.8
미국	19.7	29.9	10.2
프랑스	39.1	46.8	7.8
대한민국	19.1	24.6	5.5
일본	27.9	33.0	5.1
OECD 평균	25.7	34.8	9.1

주: 1) 조세격차(tax wedge)란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r costs, 급여 및 고용주분 사회보험료가 포함됨)에서 ‘개인소득세+사회보험료-현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2)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3)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4”

또한, 놀이시설이용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세제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놀이시설이용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8.79	89.67	92.10	93.96	97.18	99.80	100.0	101.90	106.86	113.2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반적 인 직불카드사용분과 동일한 30%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현행법상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이용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직

불카드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부여하더라도 기존에 현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놀이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던 가구 입장에서는 공제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공제혜택은 신용카드를 통해 영유아놀이시설 이용료를 지불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던 가구에게만 부여되어 실질적인 공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공제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가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외 다른 일반적인 소비지출에 귀속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조세지출의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영유아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한적인 반면 한도 상향에 따른 공제 확대 혜택은 근로소득자 전체에게 부여되어 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가 영유아놀이시설 외에 다른 일반적인 소비지출에 귀속될 우려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제항목에 대한 한도는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증가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도 100만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2025년도에는 그 규모가 2018년 대비 2배 이상인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특히 2025년도에는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총 78조 1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감면을 역시 15.9%로 최고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세지출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⁷⁾.

□ 다음으로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2023년 3조 9,458억원이고, 2024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1,18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 가계의 세부담 수준 증가,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7) 국세감면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 세법 등에 따른 조세지출의 합을 의미하고, 국세감면율은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하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산술평균에 0.5%를 더한 값을 말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실상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약 20년이 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반면, 조세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861만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263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92.7억건, 결제금액은 약 389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약 4,500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2023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6,810,202.3	28,608,422.5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192,119.0	1,262,875.4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급금액	1,164,639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발급건수	4,530	4,508	4,132	4,327	4,476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둘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더 크게 귀착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본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써, 「소득세법」 상 더 큰 한계세율⁸⁾에 직면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여력이 더 큰 고소득자에 더 큰 세제혜택에 직면하게 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셋째,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경제상황 및 관련 조세지출 규모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